

주요 개정 내용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-221호(2021.8.31.) 관련 -

□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96호(2021.6.7.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안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6호(2020.7.10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850(2021.7.27.) “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”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598(2021.7.12.) “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”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728호(2021.7.20.) “「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”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15호(2020.4.3.) “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항목 확대 (총 29항목)

구 분	코 드	내 역
심사불능 (5항목)	26-41	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관련 명세서 착오청구
	98-58	신포괄 잠복결핵 산정특례(V010) 주진단 착오
	SN-02	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자 관련 건보공단 등록정보(치과주치의, 아동등록번호, 문진표 등)와 상이
	SU-01	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
	SV-01	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

구 분	코 드	내 역
심사조정 (24항목)	B	마취료 - 연령에 맞는 산정코드로 조정(2019.8.1.이후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16호, 2018.7.1. 시행)
	B	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- 의사의 처방 및 진료행위 없이 산정된 진찰료 조정(인정사유 외의 코드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49호, 2018.1.1. 시행)
	B	진찰료 - 종별 비교하여 의과 상급종합병원급 수가코드로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-32호, 2001.6.27. 시행)
	B	협의진찰료 - 종별 비교하여 의원급 수가코드로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99호, 2016.7.1. 시행)
	B	협의진찰료 - 종별 비교하여 상급종합병원급 수가코드로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99호, 2016.7.1. 시행)
	B	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원외처방 - (상해외인 'J' 기재 명세서) 원외 처방 진찰료 산정 시 약제 미존재로 조정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201호, 2008.7.4.)
	B	원격협의진찰료 - 1일당 수가로 일투 초과분 조정(특정내역점검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6호, 2020.8.1. 시행)
	B	원격협의진찰료 -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(원격협진) 미존재 또는 착오기재로 조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6호, 2020.8.1. 시행)
	B	원격협의진찰료 - 유효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(원격협진)의 개수 비교 총투 초과분 조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6호, 2020.8.1. 시행)
	B	원격협의진찰료 - 영상정보공유가산 산정 시 의뢰료 총개수 비교 하여 초과분 조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5호, 2020.7.1. 시행)
	B	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- 일투 초과분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74호, 2016.9.23. 시행)
	B	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- 중환자실입원료 총투 비교 초과분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74호, 2016.9.23. 시행)
	B	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- 1일당 수가로 일투 초과분 조정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15호, 2020.4.3.)
	B	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- 입원기간 비교하여 총투 초과분 조정(단가순)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15호, 2020.4.3.)
B	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- 종별 비교하여 요양병원 외 산정 으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15호, 2020.4.3.)	
B	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- 외래명세서에 산정하여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3호, 2019.11.1. 시행)	

구 분	코 드	내 역
심사조정 (24항목)	B	요양기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- 1일당 수가로 일투 초과분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3호, 2019.11.1. 시행)
	B	회송료 - 외래명세서에 입원수가 산정하여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1호, 2020.10.8. 시행)
	B	의료질평가지원금 - (교육수련·연구 분야) HPV 지원 대상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타목1)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로 인청횟수 초과분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, 2021.2.1. 시행)
	B	의료질평가지원금 - (분야 평가) 입원료 총횟수 비교하여 초과분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, 2021.2.1. 시행)
	B	의료질평가지원금 - (평가 분야) HPV 지원 대상자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타목1)에 따른 본인부담면제대상자로 인청횟수 초과분 조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, 2021.2.1. 시행)
	B	의료질평가지원금 - (교육수련·연구 분야)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(S020)의 경우 낮병동 관리료 I 가 미존재하므로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, 2021.2.1. 시행)
	B	의료질평가지원금 - (분야 평가)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 사업(S020)의 경우 낮병동 관리료 I 가 미존재하므로 조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, 2021.2.1. 시행)
	B	코로나19 응급의료관리료 - 코로나-19 선별진료소운영기관 아니므로 조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, 2021.2.1. 시행)

3. 시행일자

-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